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공포, 2024.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중요한 변경 사항,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연유산의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및 적정성 검토

- 시기의 연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사. 천연기념물·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시 고시내용,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지정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 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허가절차,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허가 등의 행위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 자. 허가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허가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 차. 관리자 선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제23조)
- 카. 행정명령의 절차 및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 타. 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른 절차 및 지정서 발급·관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업무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 파. 정기조사를 하기 위한 시기 및 방법,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7조~제28조)
- 하. 천연기념물 동물의 관리구역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종을 반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9조)
- 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너. 명승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31조)

-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해 소유자등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32조)
- 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에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33조)
- 머. 시·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에 시·도지사의 문화재청 통지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조)
- 버. 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5조)
- 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어. 자연유산 조사행위 등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경우의 구제를 위해,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
- 저. 자연유산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위탁을 규정함(안 제38조)
- 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생략

라. 기타 : 생략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단체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
4.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연유산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정책자문단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보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정책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6조(자연유산의 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

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자연유산의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상세한 현재 상태
 - 가. 자연유산의 유형별 현황
 - 나.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
 - 다. 자연유산의 주요 위협요인
 - 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조사한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의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제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2.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천연기념물등이 서식·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법 제12조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

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자연유산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3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

재지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14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지정의 해제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6조(허가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안에서 이

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17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허가 등의 행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추락 등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18조(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7조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7조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7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라.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

적 보호 · 관리

바. 학술 · 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7조제2항의 행위 중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제외한다)의 촬영 행위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

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0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자연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하여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2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사유)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소각
2. 천연기념물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23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24조(행정명령의 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치의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그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산불·산림병해충 등의 긴급한 진화·방제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야생화된 가축·반려동물의 긴급한 포획·반출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긴급한 포획·채취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교란생물·유해생물의 긴급한 포획·채취 및 반출행위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업무 위탁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는 이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관리업무 위탁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
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
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
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해서
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 제29조(관리구역에 시·도지사 반입허가사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 품평회 참가 등 홍보에 필요한 경우. 다만, 일정기간에 한한다.
 4.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 등록되어 인식표가 확인된 경우
- 제3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

조제1항에 따라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 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관리현황 및 활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보호구역의 동물·식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를 포함 한다),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 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2. 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전시·활용·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유지관리 및 점검 등 상시 보존·관리

④ 문화재청장은 천연보호구역의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지역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정비계획의 계획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기간 : 10년

2. 계획범위 : 명승의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된 면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승의 주변 환경 등이 변화되어 수립된 명승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명승의 소유자등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명승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소유자등의 재해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재해의 방지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관

리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출입한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다. 훼손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2.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현장 부근에 그 위험성을 명시한 안내판 등의 설치
나. 출입자의 대비경로·대비방법 등 안내사항 홍보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분산 사육 또는 이동·보관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생태계·식생 및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 등의 보존환경 조성

마. 기후변화 및 많은 인력 출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에 대응한 일시적 또는 계절적인 휴식년의 운영

3. 피해가 발생한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재해에 대응한 응급조치
나. 훼손된 피해 종과 피해지의 특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한 복원 또는 복구

다. 훼손된 동물의 치료, 수목 등의 수리, 경관의 조성 및 생태계의 복원 또는 복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3조(허가사항에 대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해충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2. 자생 초화류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
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 같은 호 다목 중 이 영 제17조제1항 및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행위
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의 수목진료행위

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자연재해 또는 찾길사고 등으로 조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어 제2항제2호의 치료행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그 서식 및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립자연유산원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④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도자연유산은 제외한다)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통지)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의 소유자등이 자연유산 관리협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협약안을 제출받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관리협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고,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과 관리협약을 체결한다.

1. 관리협약의 명칭
 2. 관리협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관리협약의 목적
 4. 관리협약의 내용
 5. 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소유자등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관리협약의 유효기간
 7. 관리협약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리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관리협약을 체결한 소유자등은 해당 관리협약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관리협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진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체험학습장·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사업

나. 자연유산 자원·유전자원 보존·관리·활용 및 그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4.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손실의 보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타인 토지 등에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행위로 토지·시설물 등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법 제22조제1항제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나.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다.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

라.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동물·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3. 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국가의 직접 조치로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립자연유산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3. 법 제5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천연기념물”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의3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⑤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와”를 “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로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를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⑦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의”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3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5조”를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⑪ 산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2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를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
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
항에 따른 시·도자연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하
다)”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사목을,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자연유산)

4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자연유산)의 산지

⑮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따른 보호구역”을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⑯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8조의9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⑱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유산의”로 한다.

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구역

㉒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찰을”을 “사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사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을”을 “시설물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을”로 한다.

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의 조사·추가조사 행위

㉓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

제17조제3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이”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로 한다.

㉕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6항”을 “제6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㉖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자연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㉓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6항”을 “제6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해당하는 주택

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③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⑪ 토지이용규제 기본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임시지정문화재로”를 “임시지정문화재로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로 한다.

③⑫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⑭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6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㉟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천연 기념물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生長)하는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2) 동물자원·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 최대, 최장, 최소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草花類)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3.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설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사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침식·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 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움푹한 곳), 사구, 해변(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물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瀉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굴,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명승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경관,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가. 동물·지질·천연보호구역·지형·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2. 명승의 보호구역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	가. 건물 또는 보호책·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그 밖의 보호물은 실내·외에 전시·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	300	400	500
나. 법 제21조제1항제6호·제9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항(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	150	200	300
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8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3항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연 락 처	(042) 481 - 4981